

도시관리계획(대학로 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22호(2006.09.21.)로 결정된 「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이화동 123-7 일대 획지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2.05.26.)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25일

종로구청장

1.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가.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: 변경

○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

가 구	획 지 번 호	지 번	면 적(m ²)	계획내용	비 고
E2-a	5	기정	이화동 122-7, 123-6, 123-7, 122-8	획지선 지정	과소필지 해소
		변경	이화동 122-4, 122-8, 123-1, 123-2, 123-3, 123-4, 123-5, 123-6, 123-7		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
☐ E2-a-5 획지범위 변경 - 기정 : 199.0m ² - 변경 : 221.9m ² (증 22.9m ²)	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중 오기사항 정정 및 대상지 주변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획지계획 변경

○ 결정(변경)도

기정	변경
 1 이화동 123-7 외 4필지 기존 획지구역 (사업범위) 2 4필지 추가 (122-8, 123-2, 123-3, 123-5)	 1 이화동 123-7 외 8필지 (4필지 추가, 획지구역 변경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나. 대지내 공지 및 통로 : 신설

○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결정조서

구 분	가구번호	위치	계획내용		비고
			기정	변경	
대지내 공지	공공보행통로 (지정)	-	이화동 123-1, 123-4	-	신설(폭원2m)

○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
☐ 공공보행통로 신설 - 위치 : 이화동 123-1, -4 - 규모 : 폭원 2m, 연장 25m	획지(E2-a-5) 내 기존 보행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신설

○ 결정(변경)도

기정	변경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○ 민간부문 시행지침

기정	변경
제26조 (보차혼용통로) ① 보차혼용통로는 지정된 위치와 폭원에 맞게 조성하여야 하며, 24시간 차량과 보행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. ② 보차혼용통로의 최소폭은 4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피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높이를 6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 ③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안된다. 또한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필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안되며, 보차혼용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는 경사로로 처리한다. ④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공간 등 보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 구분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담장·계단·화단 등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. ⑤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. ⑥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한 건축한계선 부분은 장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고려하여 지하층 부분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. ⑦ 지정된 위치에 지침에 맞게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한 경우,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.	제26조 (보차혼용통로·공공보행통로) ① 보차혼용통로는 지정된 위치와 폭원에 맞게 조성하여야 하며, 24시간 차량과 보행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. ② 보차혼용통로의 최소폭은 4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, 피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높이를 6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 ③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안된다. 또한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필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안되며, 보차혼용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는 경사로로 처리한다. ④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공간 등 보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 구분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담장·계단·화단 등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. ⑤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. ⑥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한 건축한계선 부분은 장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고려하여 지하층 부분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. ⑦ 지정된 위치에 지침에 맞게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한 경우,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. ⑧ 공공보행통로는 상기 2항~5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공공보행통로의 최소폭은 2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

2. 열람장소 : 종로구청 건축과(☎02-2148-281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